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46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 박수현 · 오세희 · 이연희

조인철 · 이개호 · 황 희

박용갑ㆍ이건태ㆍ정준호

신영대 · 임호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업·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(이하 "공익직접지불제도"라 함)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.

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)을 지 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. 이는 임산물생산 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, 재배방 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음.

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'해당 연도'에 소규 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 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"직전"을 "해당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직전"을 "해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	제8조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		
지급대상자) ① • ② (생	지급대상자) ① • ②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③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			
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.			
다만,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			
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			
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			
없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「농업・농촌 공익기능 증진	3		
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			
률」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			
가직접지불금(임산물생산업			
직접지불금 신청일의 <u>직전</u> 연	<u>해당</u>		
도에 한정한다)을 지급받은			
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			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	제9조(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		
지급) ① 산림청장은 임업・산	지급) ①		
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			

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. 다만, 법인 및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<u>직전</u> 연도에 한정한다)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기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. 1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<u>해당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